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98호 2019. 5. 22.(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제2019-51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2
 제2019-52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제2019-67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6
 제2019-686호 보상계획열람공고 7
 제2019-689호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1
 제2019-690호 공시송달 공고 14
 가북면 공고 제2019-4호 클린지킴이 음성 CCTV(스마트경고판)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15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2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3호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8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2.

거창군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지정고시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명	소재지	보호구역 지정구간	연장
거창 나래학교	경남 거창군 마리면 송림길 52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송림길 52	L=320m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 참조

3.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82)

(붙임 1)

□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위치도(거창나래학교)

거창군 마리면 송림길 52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2.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3길 44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27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773-8	2009-07-02	2019-05-2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85-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740-6	2009-12-28	2019-05-22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1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3길 44	2009-04-01	2019-05-22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27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111-4	2009-04-01	2019-05-22	당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403-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상수내길 30-1	2009-04-01	2019-05-22	마을 곁의 냇물이 마을을 안고 있는 듯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6길 22	2016-04-20	2019-05-22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거창군



1. 공고기간 : 2019. 5. 21.(화) ~ 2019. 6. 10.(월) / 20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사항	처 분 일
아이센스PC방	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0-1, *층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과징금 50만원	2019.5.10.(금)
아이센스PC방 거창대동점	김○○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92, *층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과징금 25만원	2019.5.10.(금)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제27조제1항 별표6

4. 문의처

- 담당부서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전화번호 : 055-940-3414 / 팩스: 055-940-3409

보 상 계 획 열 략 공 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 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21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만남의 광장 조성 1식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21번지의 31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거창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48,947	20,079					
1	거창읍 대평리	888-1	답	2,003	2,003		거창군			
2	거창읍 대평리	874	답	1,997	1,997		거창군			
3	거창읍 대평리	868-1	도	632	265		국(농림수산부)			국
4	거창읍 대평리	10-2	구	28,732	1,025		국(농림수산부)			국
5	거창읍 대평리	820	답	1,706	1,706		거창군			
6	거창읍 대평리	806	답	517	147		거창군			
7	거창읍 대평리	807	답	245	245		국(국토교통부)			국
8	거창읍 대평리	821	답	2,202	2,202		거창군			
9	거창읍 대평리	808	답	750	750		거창군			국
10	거창읍 대평리	810-1	답	160	160		거창군			
11	거창읍 대평리	810-10	답	319	319		국(국토교통부)			국
12	거창읍 대평리	868-2	도	56	56		국(농림수산부)			국
13	거창읍 대평리	879-3	도	493	493		거창군			국
14	거창읍 대평리	879-1	도	1,314	1,314		국(국토교통부)			국
15	거창읍 대평리	879	답	129	129		국(국토교통부)			국
16	거창읍 대평리	878-2	답	131	131		국(국토교통부)			국
17	거창읍 대평리	878-1	답	262	262		거창군			
18	거창읍 대평리	878	답	360	360		거창군			
19	거창읍 대평리	877	답	258	258		거창군			
20	거창읍 대평리	876	답	1,028	1,028		거창군			
21	거창읍 대평리	875	답	1,028	1,028		거창군			
22	거창읍 대평리	892	답	123	123		국(국토교통부)			국
23	거창읍 대평리	891-1	답	148	148		국(국토교통부)			국
24	거창읍 대평리	891	답	880	880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25	거창읍 대평리	890	답	1,005	1,00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26	거창읍 대평리	889	답	1,005	1,00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27	거창읍 대평리	810-6	도	14	14		국(국토교통부)			국

28	거창읍 대평리	810-7	답	183	183		거창군			국
29	거창읍 대평리	808-5	답	270	270		국(국토해양부)			국
30	거창읍 대평리	808-7	답	442	442		국(국토교통부)			국
31	거창읍 대평리	821-1	답	36	36		국(국토해양부)			국
32	거창읍 대평리	807-5	답	519	95		국(국토해양부)			국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의종 류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	거창읍 대평리	891	출입 교량	콘크리 트 4*5	1 식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방지를 위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차량 운행속도 저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명 : 남상면 대현마을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설치규모 : 무인과속단속카메라 1대
- 설치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98-3번지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년 5월 23일 ~ 2019년 6월 12일(21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panpan55@korea.kr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남상면 대현마을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상면 대현마을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 2019 - 690호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지사가 시행하는 「국도37호선 거창 마리 도로보도설치공사, 18수용1049」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5월 22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국도37호선 거창 마리 도로보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3. 공고기간 : 2019. 5. 22. ~ 2019. 6. 7.
4. 재결서 수령장소
거창군청 건설과(거창읍 중앙로 103)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1	이증**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 2101호	공시송달 대상
2	유소*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333번길 3*-11, 102동 *01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지킴이 음성 CCTV(스마트경고판)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0일

거 창 군 가 북 면 장

1. 행정예고명 :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3. 행정예고기간 : 2019. 5. 20. ~ 2019. 6. 10.(22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9. 5. 20. ~ 2019. 6. 10.(22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유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설치위치 : 가북면 용산리 1076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 가북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가북면사무소, (우)50117
- 팩스 : 055-940-785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가북면사무소 (☎ 055-940-7863)

주 민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제출 내용	
<p>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 가북면장 귀하</p>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나. 지원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서식)

4. 입법예고기간 : 2019. 5. 17. ~ 2019. 5. 22.(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5. 22.(수)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예방하여”를 “예방하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를”을 “제3조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32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범위)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장치 설치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제4조 중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u>예방하여</u>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거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화재취약계층"이라 한다)가 거주하는 주택에 <u>소방시설 설치를</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u>제2조에 따른</u>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u>예방하고</u>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거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화재취약계층"이라 한다)가 거주하는 주택에 <u>제3조 각 호의 사업을</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u>제32조에 따라 등록</u>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제3조(지원범위)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조(지원범위)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장치 설치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다.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빈집 정비 대상 및 지원 대상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5. 17. ~ 2019. 5. 22.(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5. 22.(수)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 대상) ①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도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7. 23.]